

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13일
-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경제특별도 위상에 맞는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되도록 현행 기업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수도권만이 아닌 타 시·도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에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: 20인 이내(안 제3조 내지 제8조)
-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활용(안 제10조)
  - 컨설팅사, 기업관련 기관, 투자유치 전문회사 등
  - 충청북도 투자자문단 구성 : 30인 이내

- 투자진흥기금 설치(안 제13조 내지 제17조)
- 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(안 제27조)
- 타 시·도 기업 이전비 지원(안 제28조)
  - 본사이전 : 토지매입비, 건축비 등 투자금액의 5%, 2억원까지 지원
  -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: 토지매입비 및 공장시설 등 10억원 초과  
투자금액의 5%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
  - ※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: 각각 2억원까지 지원
- 도내공장 증설시 지원(안 제29조)
  - 토지매입비 또는 기존공장 부지에 공장건축과 시설설치시  
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%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
-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(안 제30조)
  - 대 상 : 도내 낙후지역의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
  - 방 법 :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후 지정
  - 지 원 : 토지금액 및 공사시설 금액의 20% 범위안에서 추가 용자 지원
- 지원한도(안 제 32조)
  - 이전보조금 + 교육훈련보조금 + 고용보조금 : 50억원(기업당)
- 특별지원(안 제33조)
  -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, 조례에서 정한  
범위 초과하여 지원 가능
- 시·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분담(안 제34조)
  -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정함

- 투자유치 성공 보상(안 제38조)
  - 대 상 : 민간인 및 공무원, 단체, 전문가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재정지원 대상이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도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타 시·도 및 도내 공장 증설까지도 지원이 가능 하도록 전면개정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
- 다만, 안 제13조의 투자유치진흥기금설치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의하여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, 법령이라 함은 법률·법규명령 및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을 포함한 것이고 개별법령의 특정조항뿐만 아니라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모순·저촉되지 않는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와 모순·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정해야 하므로,
  -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
- 안 제15조의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금고로 일원화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
- 안 제33조의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사항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소 탄력적이긴 하나 자칫 단체장의 재량이 남용될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  
- 안 제38조의 투자유치 성공 보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 제정 시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재량권 남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관 련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.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

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재정법

제77조(금고의 설치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, 시·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5조(운용·관리) ①통합기금은 통합기금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운용·관리하되,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통합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③통합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④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이 지정하는 도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